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02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86	김윤덕의원 등 12인	'24.7.8.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정부	'24.7.16.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위원

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 이외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까지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실 국가유산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예외사유인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대상 분야를 확대함(안 제4조의2).
- 나.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공사업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의2).
- 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9조).

-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의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함(안 제11조).
- 마. 벽지를 바르거나 안내판 설치·보수 등 전문적인 수리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청장 등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3조의2제1항 단서신설 등).
- 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 또는 사 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 도록 하는 한편, 자본금 이외의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49 조제1항제4호의2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공예의"를 "공예 등의"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를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보유자는"을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를 "제1호·제3호·제4호의2·제5호 또는 제19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미달한 사실이 있는"을 "미달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본금이 일시적으로"를 "일시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 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58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 제3호·제5조의2·제11조제1항·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회) ① · ② (생 략)	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	
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3
법률, 종교, 미술, <u>공예의</u> 업	<u>공예</u>
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u>등의</u>
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u>제5조제1항</u> 에도 불구하	예외) <u>제5조제1항 본문</u>
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	
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 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 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 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 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 5. (생략)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 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 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 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 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 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

·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
격사유)
1 1 11 7
<u>1. 18세 미만인 사람</u>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시험 등) ①
Т
<u>제17조, 제19조, 제32조</u>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
<u>산 및 시·도무형유산의 보유</u>
<u>자와 전승교육사</u>

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략)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 경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3항제2호및 제3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제33조의5까지,제33조의6제1항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설계승인을 받아야한다. <단서신설>

- 1.·2. (생략)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

<u>보유자 및 전승</u>	亚
육사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	계
승인) ①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	르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
<u>니한다.</u>	
1.·2.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 각 호 외</u>	의

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 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 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 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 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 략)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 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 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

<u> 부분 본문</u>
<u>.</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u>제33조의2제1항 각</u>
호 외의 부분 본문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u>제</u>
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u>본문</u>

으로 본다.

② (생략)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 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 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한다.

② ~ ④ (생 략)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 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 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u>, </u>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u>제33조의2제1항 각 호</u>
<u>외의 부분 본문</u>
- <u>,</u>
1. ~ 3. (현행과 같음)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
록취소 등)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u>미달한 사실이 있는</u>경우. 다만, <u>자본금이 일시적으로</u> 등록요건에 미달하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5. ~ 18. (생 략) <신 설>

<u>제1호·제3호 · 제4호의2 · 제</u>
<u>5호 또는 제19호에</u>
<u>.</u>
1. ~ 3. (현행과 같음)
4
<u>미달하게 된</u>
<u>일시적으로</u>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 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 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 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 18. (현행과 같음)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

② ~ ④ (생 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3의2. (생략)
- 4. <u>제33조의2제1항</u>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 한 자

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 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을 말소한 경우

을 말소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1. ~ 3의2. (현행과 같음)
4. <u>제33</u> 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u>부분 본문</u>